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6회 정례회
2025. 6. 10.(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3. 제안이유

○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주체들의 책무 및 협력체계, 위원회 설치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안전 시책 추진 시 본 조례 우선 적용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 사업자의 책무와 역할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 규정 (안 제4조~제6조)

다.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수당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구체적 운영 규정(안 제9조~제12조)

마. 식품안전 관련 정보 제공과 도민 제안제도 운영 규정(안 제13조)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식품안전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본권으로, 국가 단위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시책 수립이 요구됨.

○ 특히,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식품안전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지사, 사업자, 도민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사항임.

○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 설치, 사업자·도민의 책무 및 권리 규정 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위촉 방식, 회의 절차, 수당 지급, 비밀준수 의무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운영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민 참여 확대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항(안 제13조)은 주민자치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며, 도민의 식품안전 감시 및 정책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식품안전 시책 추진 시 본 조례 우선 적용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지사, 사업자의 책무와 역할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함.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수당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구체적 운영사항에 관해 규정함.
- 안 제13조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 제공과 도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6. 2.~`25. 6.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식품안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례안으로 판단됨.

○ 상위법의 위임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입법권에 부합하며, 도내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